

노인인권보호지침

노인학대신고 · 상담전화

1577-1389

www.noinboho.or.kr



푸른노인요양원



I. 노인인권

1. 인권이란?

인권(human rights, 人權)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인 권리로써 시대나 상황에 무관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➡ **‘인간답게 살 권리’**

| 세계인권선언 제2조 |

모든 사람은 인종, 피부색, 성, 언어, 종교,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, 출신, 민족적 또는 사회적 신분(출신), 재산의 많고 적음,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(신분)에 따른 그 어떤 구분(종류의 차별)도 없이, 이 선언에 나와 있는 (규정된)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.

2. 노인인권이란?

『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』
『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가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』

노인의 존엄성을 보호되고,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,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.

- 1991년 노인을 위한 UN원칙 내용 중 -

3. 노인인권의 영역

영역 1: 건강·돌봄 1. 신체건강 2. 정신건강 3. 돌봄권	영역 2: 기본 생활의(여)권 1. 의생활 2. 식생활 3. 주거생활	영역 3: 소득 1. 빈곤 예방 및 해소 2. 소득
영역 4: 고용·노동 1. 일자리 또는 고용 기회 2. 근로환경 3. 가족 돌봄 노동	영역 5: 사회참여·통합 1. 사회활동 참여 2. 세대교류 및 소통	영역 6: 존엄·안전 1.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2. 생명권 3. 안전권

4.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

-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
-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
-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-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시설 내 · 외부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5.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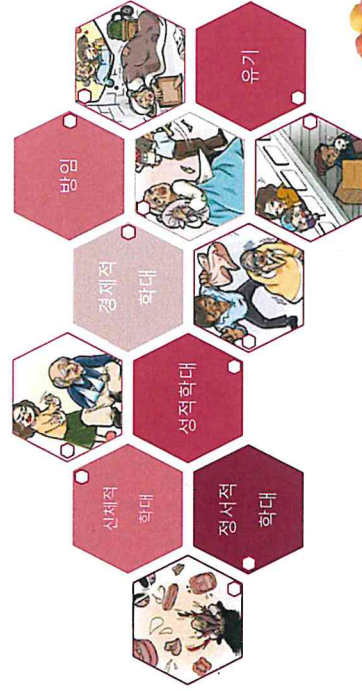
-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
-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시설 내 ·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
- 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
-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- 개인소유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-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
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시설 내 ·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,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
- 시설 입 · 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이용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
모든 부분에서 정도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
II. 노인학대

1. 노인학대의 정의
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· 정신적 ·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.
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,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.

2. 노인학대의 유형



3. 노인학대 대응법



4. 노인학대 7대 예방지침

1.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믿는다.
2.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
3.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한다.
4. 어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한다.
5.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.
6.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.
7.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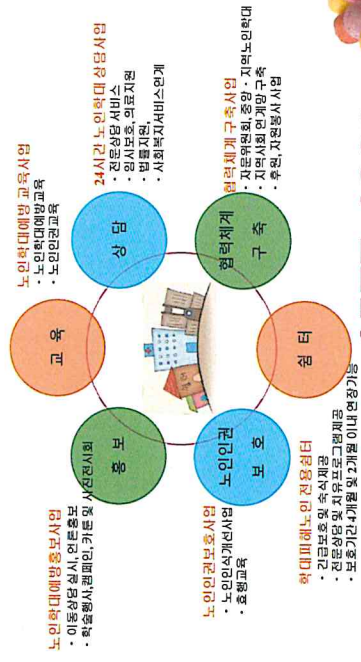
5. 노인학대 신고의무자

1. 의료법 제 3조 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.
2. 노인복지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.
3. 노인복지 상담원, 노인복지 사업 보조 사회복지자, 노인복지 사회 복지 전문 사회복지자

경찰(112)
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
1389)
보건복지부(129)에
증서 신고 한다.

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?

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·도에서 노인학대에 방
만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
1577-1389

국립중앙도서관
국립중앙도서관
국립중앙도서관